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50-8471~4 / 전송 750-8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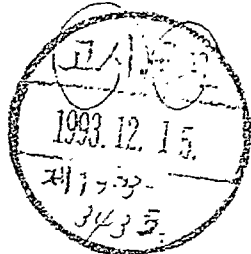
문서번호 문제 86715-1098

시행일자 1993.12.5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부	시	장	전결 12/13
문화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문화재과장			78
기안	문화재 1제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변경 지정 고시 ✓

1.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에 대하여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변경내용 : 별첨 고시안

나.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변경 지정하고 동조례 1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함.

첨부 : 고시(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문화재관리국장

참조 유형문화재과장

제목 서울시 문화재 변경 지정 통보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변경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2. 해당 도면 및 사진 1건.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성동구청장

참조 문화공보실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변경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문화재를 변경 지정 하였기 통보하니,
2. 관련 해당과(시민봉사실, 세무1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저과, 토지관리과, 공원녹지과등) 및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관계 공부 청리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

첨부 : 1. 고시(안) 1부. 끝.

2.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변경 지정 통보

1.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변경 지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1부. 끝.

문화재과장

수신처 : 세정과,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지도과, 도시개발과, 도로시설과, 재개발과, 공원과, 녹지과장

(제 5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별첨 고시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변경 지정하였기 재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1부. 끝.

문화재과장

2시	11시	12시	1시	2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변경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3. 12.

서울특별시장

■ 문화재 변경 지정 목록

종 별	지 정 번 호	당 초 지 정	변 경 지 정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화양동 느티나무 ○ 소재지:성동구 화양동 110-32,34 ○ 지정내역 · 지정물 : 7그루 ○ 관리의무자 : 성동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좌동 ○ 소재지:성동구 화양동 110-34 ○ 지정내역 · 지정물 : 노거수 1그루 ○ 관리의무자 : 좌동

議 決 書

1. 서울 城廓 周邊 建築物 審議 (종로구 혜화동 28번지 9호)

조건 승인 (성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안전 대책 강구즉시공조건)

2. 효창公園 周邊 建築物 審議 (용산구 청파동 2가 1-142호외 2필지)

조건 승인

3. 文化財 現狀變更 許可 審議 (보호구역 토지 일부 도로개설)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0호 보신각지

조건 승인 (소.4M 도로 개설하되 후후3M 도로가 확보 되도록 개설도로

경계선에서 0.6m 후퇴하는데 인접대지 (45-2,8)주의 동의를 받은 조건으로

4. 文化財 現狀變更 許可 審議 (광고물 설치) 도로계획선 지점 승인)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0호 보신각지

후 결 (문화재 주변 환경 전해)

5. 文化財 現狀變更 許可 審議 (종로구 관훈동 30번지 1호)

-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8호 이진승가 부속채 용도변경

조건 승인

6. 서울市 民俗資料 (한옥) 移轉 審議

- 종로구 원서동 9의 5

조건 승인: 1. 문화재 관측이 편리하게 간접 되었다는 서울시 기록보존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등록한 설계도자간 의견차이없고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승인이 유래 이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함
2. 연경각역이 이전 문화재의 주변 정원에 전해되지 않도록 정수동은 12m
이하를 라인 전체적인 의견은 주성 현상변경 허가를 득함

7. 文化財 指定變更 審議 3. 나동 이전방향을 기존 국외인 방경나 강은 방경으로 처리 하관

- 서울市 紀念物 第2號 花陽洞 忠烈사

조건 승인

8. 약현성당 周邊 建築物 審議 (중구 중림동 441번지의 10필지)

원안승인

9. 효창공원 周邊 建築物 審議 (용산구 효창동 3-67호)

원안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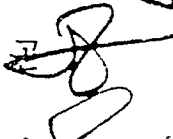


10. 慶熙宮址 周邊 建築物 審議 (종로구 신문로2가 1-265회 3필지)

원안승인

1993. 11. 25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강영선
이정덕
김홍식

주 남 철		맹 인 재
박 언 공		김 동 
김 성 우		이 경 재

